

#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51
----------	------

제출년월일 : 2010. 6 .  
제출자 : 충주시장

## 1. 제안이유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소규모 피해농가 보상기준 완화 및 폐해보상 한도액의 상향조정등으로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피해보상 제외대상(안 제5조)
-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안 제8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10조)
- 보험가입(안 제14조의 2)

##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4. 기타 참고자료 : 별 첨

붙임 : 가.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기타참고자료(관계 법령 및 공문)

## 충주시 조례 제 호

###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원"을 "보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피해보상)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5조 제목과 본문 및 같은 조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피해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해당 경작지의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피해보상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보상)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피해보상금은 동일 농가에 대하여 당해 연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경작지에 대한 보상은 매년 1회에 한한다.

- ② 보상금은 피해액의 7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목포함) 중 "지원"을 각각 "보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피해지원과 관련한"과 "충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 피해지원금지급심의위원회"를 각각 "피해보상과 관련한"과 "충주시 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상금 지급액 결정

제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 2(보험가입)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안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보상</u> ----- -----</p>
<p>제3조(피해지원)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3조(피해보상)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p>
<p>제5조(피해지원 제외대상) 피해 농가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 피해지원 산정액이 20만원 미 만인 경우</li> <li>2. 해당 경작지의 피해율이 20퍼센트 미만인 경우</li> <li>3. ~ 5. (생략)</li> </ol>	<p>제5조(피해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li> <li>2. 해당 경작지의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li> <li>3. ~ 5. (현행과 같음)</li> </ol>
<p>제8조(피해지원금 지급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동일 농가에 대하여 당해연도 지급금액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경작지에 대한 지원은 매년 1회에 한한다.</p> <p>② 지원금은 피해액의 7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피해보상금은 동일 농가에 대하여 당해연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경작지에 대한 보상은 매년 1회에 한한다.</p> <p>② 보상금은 피해액의 7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피해 지원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해당농가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피해지원금은 피해신고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6월 이전 수확된 피해농작물은 7월말까지 지급한다.</p> <p>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농가가 피해지원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p>	<p>제9조(—보상—) ① —————— 보상————— ————— ② —보상————— ————— ————— ③—————보상————— —————보상————— —————</p>
<p>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피해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야생동물에의 한농작물피해지원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 ④ (생략)</p>	<p>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피해보상과 관련한————— —————충주시야생동물에의한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2. 지원금 지급액 결정</p> <p>1, 3 (생략)</p> <p><u>&lt; 신설 &gt;</u></p>	<p>제11조(위원회의 기능)————— ————— 2. 보상금————— 1, 3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의 2(보험가입)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u></p> <p><u>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u></p> <p><u>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u></p> <p><u>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 관계법령 발췌

###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보호야생동물에 대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 공원구역
  7.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울타리·방조망(방조망)·경음기(경음기)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②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 신청서에 각각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 나.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 다.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2.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
  - 가.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 나.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다. 피해내역서
  - 라.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